

제1410호

2013. 12. 5(목)

발행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집인 : 홍 보 전 산 과 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55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2013-144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고 시

- 제2013-109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12
- 제2013-110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및 지정 고시 13
- 제2013-11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4

공 고

- 제2013-1409호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5
- 제2013-1444호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의견수렴 공고 17
- 제2013-1445호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 공람공고 2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행정정보→행정자료→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02)2670-7555 / 전송 :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194-0086-2013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3-144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2013.12.12.)에 맞춰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종전환 : 기능직 · 별정직 → 일반직 · 연구직

(단위: 명)

직종	기능직	별정직	연구직	일반직
증감	△192	△8	+1	+199

○ 세부내용

구분	전 환 내 용	비 고
기능직	관리운영직군/신설 직렬	관리운영직군은 전직시험을 통하여 일반직 전환
별정직	신설 직렬/유사직렬/전문경력관/별정직 존치	유사직렬은 점담직위 지정 후 전직시험을 통하여 일반직 전환
계약직	임기제 일반직	

○ 영등포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 기능직(192명 → 0명) : 관리운영직군 93, 기술직군 85, 행정직군 14
- 별정직(12명 → 4명) : 행정직군 6, 연구직군 1, 전문경력관 1
- 계약직 및 개방형 직위(39명) :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385-1), 전화 : 2670-3324, 팩스 : 2670-357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직급별 정원)을 ‘(직급·직렬별 정원)’으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정원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개 정 안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88	880	27	105	276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82	876	25	105	276
3급 소계	1	1			
부 이사관	1	1			
4급 소계	7	5	1	1	
서 기 관	4	3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61	30	2	11	18
행정	23	22		1	
행정또는임기제행정(감사)	1	1			
행정,시설,보건 또는환경	18				18
행정,공업,보건 또는환경	1	1			
행정 또는 녹지	1	1			
행정 또는 별정	2		2		
시설	4	4			
행정 또는 시설	1	1			
행정 또는 보건	1			1	
행정,의무,간호 또는약무	1			1	

의무 또는 약무	1			1	
임기제 의무(의사)	7			7	
6급 소계	262	202	5	18	37
행정	155	126	3	7	19
세무	15	15			
행정 또는 녹지	3	3			
시설	14	14			
공업	5	5			
행정 또는 공업	2	2			
행정 또는 별정	2	0	2		
행정 또는 전산	1	1			
행정, 수의 또는 보건	1			1	
행정 또는 시설	8	8			
보건, 공업 또는 환경	2	1		1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행정, 약무,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약무 또는 보건	2			2	
간호 또는 보건	1			1	
간호	2			2	
사회복지	7	7			
행정 또는 사회복지	22	4			18
임기제 보건진료(한의사)	1			1	
행정 또는 통신	1	1			
기계운영	3	3			
전기운영	5	5			
필기운영	3	3			
운전	3	3			
임기제 시설(교통)	1	1			
7급 소계	423	303	6	35	79
행정	171	105	4	10	52
세무	32	32			
사회복지	25	9			16
행정 또는 사회복지	45	35			10
공업	7	7			
녹지	2	2			
보건	5	3		2	
시설	12	12			
행정 또는 시설	9	9			
행정, 공업 또는 별정	1	1			
환경	3	3			
행정, 녹지 또는 시설	1	1			
행정 또는 통신	3	3			
의료기술	3			3	
약무 또는 보건	3			3	
간호	13			13	
임기제 시설(교통)	1	1			
행정 또는 전산	3	3			

임기제 시설(도시디자인)	1	1			
임기제 행정(공연기획)	1	1			
임기제 행정(영상홍보)	1	1			
토목운영	1	1			
기계운영	8	8			
전기운영	13	13			
필기운영	12	12			
위생(사역)	1			1	
운전	32	29		3	
시설관리	6	5			1
숙기	2		2		
방호(경비)	6	6			
8급 소계	394	251	9	31	103
행정	138	73	2	6	57
세무	26	26			
사회복지	18	12			6
행정 또는 사회복지	44	34			10
공업	9	9			
녹지	3	3			
보건	5			5	
행정 또는 시설	28	28			
시설	7	7			
환경	1	1			
전산	3	3			
통신	1	1			
의료 기술	6			6	
간호	9			9	
임기제 시설(교통)	0	0			
녹지 또는 시설	1	1			
임기제 전산(전산)	1	1			
임기제 시설(도시계획)	1	1			
임기제 행정(관광기획홍보)	1	1			
임기제 시설(운전)	1	1			
임기제 시설(토목)	0	0			
기계운영	4	3		1	
전기운영	8	8			
필기운영	27	20	1	1	5
전산운영	1	1			
운전	23		2	1	20
시설관리	21	13		1	7
숙기	2		2		
방호(경비)	7	4	2	1	
원예운영	1	1			
9급 소계	132	82	2	9	39
행정	29	11	2	4	12
세무	7	7			
사회복지	24	1			23

행정 또는 사회복지	5	5			
공업	4	4			
보건	3			3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시설	7	7			
행정 또는 시설	13	13			
전산	2	2			
통신	2	2			
녹지	4	4			
농업	1	1			
환경	1	1			
행정 또는 전산	1	1			
임기계 시설(교통)	2	2			
임기계 행정(영상)	2	2			
임기계 의료기술(치위생사)	1			1	
임기계 행정(평생학습)	2	2			
임기계 행정(체육여가)	1	1			
임기계 행정(홍보)	1	1			
임기계 식품위생(영양사)	1	1			
임기계 시설(운전)	10	10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	1	1			
필기운영	5	2			3
전산운영	0	0			
운전	0	0			
시설관리	1				1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화생방	2	2			
별정직 총계	4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상당 소계	2	1	1		
비 서	2	1	1		
8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연구직 계	1	1			
연구사 소계	1	1			
기록연구	1	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급별 정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현 행					직급별 기관별	개 정 안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88	880	27	105	276	총 계	1,288	880	27	105	276
정무직 계	1	1	0	0	0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083	732	16	96	239	일반직 계	1,282	876	25	105	276
3급 소계	1	1	0	0	0	3급 소계	1	1			
부 이사관	1	1				부 이사관	1	1			
4급 소계	7	5	1	1	0	4급 소계	7	5	1	1	
서 기 관	4	3	1			서 기 관	4	3	1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2	2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1			1		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61	30	2	11	18	5급 소계	61	30	2	11	18
행정	24	23		1		행정	23	22		1	
신 설						행정또는임기제행정(감사)	1	1			
행정,시설,보건또는환경	18				18	행정,시설,보건 또는환경	18				18
행정,공업,보건또는환경	1	1				행정,공업,보건 또는환경	1	1			
행정 또는 녹지	1	1				행정 또는 녹지	1	1			
행정 또는 별정	2		2			행정 또는 별정	2		2		
시설	4	4				시설	4	4			
행정 또는 시설	1	1				행정 또는 시설	1	1			
행정 또는 보건	1			1		행정 또는 보건	1			1	
행정,의무,간호또는약무	1			1		행정,의무,간호또는약무	1			1	
의무 또는 약무	1			1		의무 또는 약무	1			1	
의사(계약직)	7			7		임기제약무(의사)	7			7	
6급 소계	234	174	5	18	37	6급 소계	262	202	5	18	37
행정	141	112	3	7	19	행정	155	126	3	7	19
세무	15	15				세무	15	15			
행정 또는 녹지	3	3				행정 또는 녹지	3	3			
시설	14	14				시설	14	14			
공업	5	5				공업	5	5			
행정 또는 공업	2	2				행정 또는 공업	2	2			
행정 또는 별정	3	1	2			행정 또는 별정	2	0	2		
행정 또는 전산	1	1				행정 또는 전산	1	1			
행정,수의 또는 보건	1			1		행정,수의 또는 보건	1			1	
행정 또는 시설	8	8				행정 또는 시설	8	8			
보건,공업 또는 환경	2	1		1		보건,공업 또는 환경	2	1		1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행정,약무,보건또는 의료기술	1			1		행정,약무,보건 또는의료기술	1			1	
약무 또는 보건	2			2		약무 또는 보건	2			2	
간호 또는 보건	1			1		간호 또는 보건	1			1	
간호	2			2		간호	2			2	
사회복지	7	7				사회복지	7	7			
행정 또는 사회복지	22	4			18	행정 또는 사회복지	22	4			18
한의사(계약직)	1			1		<u>임기제 보건진료(한의사)</u>	1			1	
행정 또는 통신	1	1				행정 또는 통신	1	1			
신 설						<u>기계운영</u>	3	3			
						<u>전기운영</u>	5	5			
						<u>필기운영</u>	3	3			
						<u>운전</u>	3	3			
						<u>임기제 시설(교통)</u>	1	1			
7급 소계	350	237	4	31	78	7급 소계	423	303	6	35	79
행정	179	113	4	10	52	행정	171	105	4	10	52
세무	32	32				세무	32	32			
사회복지	25	9			16	사회복지	25	9			16
행정 또는 사회복지	45	35			10	행정 또는 사회복지	45	35			10
공업	7	7				공업	7	7			
녹지	2	2				녹지	2	2			
보건	5	3		2		보건	5	3		2	
시설	12	12				시설	12	12			
행정 또는 시설	9	9				행정 또는 시설	9	9			
행정,공업 또는 별정	1	1				행정,공업 또는 별정	1	1			
환경	3	3				환경	3	3			
행정,녹지 또는 시설	1	1				행정,녹지 또는 시설	1	1			
행정 또는 통신	3	3				행정 또는 통신	3	3			
의료기술	3			3		의료기술	3			3	
약무 또는 보건	3			3		약무 또는 보건	3			3	
간호	13			13		간호	13			13	
<u>교통(계약직)</u>	1	1				<u>임기제 시설(교통)</u>	1	1			
행정 또는 전산	3	3				행정 또는 전산	3	3			
<u>도시디자인(계약직)</u>	1	1				<u>임기제 시설(도시디자인)</u>	1	1			
<u>공연기획(계약직)</u>	1	1				<u>임기제 행정(공연기획)</u>	1	1			
<u>영상홍보(계약직)</u>	1	1				<u>임기제 행정(영상홍보)</u>	1	1			
신 설						<u>도목운영</u>	1	1			
						<u>기계운영</u>	8	8			
						<u>전기운영</u>	13	13			
						<u>필기운영</u>	12	12			

						위생(사역)	<u>1</u>			<u>1</u>	
						운전	<u>32</u>	<u>29</u>		<u>3</u>	
						시설관리	<u>6</u>	<u>5</u>			<u>1</u>
						숙기	<u>2</u>		<u>2</u>		
						방호(경비)	<u>6</u>	<u>6</u>			
8급 소계	<u>307</u>	<u>208</u>	<u>2</u>	<u>26</u>	<u>71</u>	8급 소계	<u>394</u>	<u>251</u>	<u>9</u>	<u>31</u>	<u>103</u>
행정	<u>140</u>	<u>77</u>	2	6	55	행정	<u>138</u>	<u>73</u>	2	6	<u>57</u>
세무	26	26				세무	26	26			
사회복지	18	12			6	사회복지	18	12			6
행정 또는 사회복지	44	34			10	행정 또는 사회복지	44	34			10
공업	9	9				공업	9	9			
녹지	3	3				녹지	3	3			
보건	5			5		보건	5			5	
행정 또는 시설	28	28				행정 또는 시설	28	28			
시설	7	7				시설	7	7			
환경	1	1				환경	1	1			
전산	3	3				전산	3	3			
통신	1	1				통신	1	1			
의료 기술	6			6		의료 기술	6			6	
간호	9			9		간호	9			9	
교통(계약직)	1	1				임기제 시설(교통)	<u>0</u>	<u>0</u>			
녹지 또는 시설	1	1				녹지 또는 시설	1	1			
전산(계약직)	1	1				임기제 전산(전산)	1	1			
도시계획(계약직)	1	1				임기제 시설(도시계획)	1	1			
관광기획홍보(계약직)	1	1				임기제 행정(관광기획홍보)	1	1			
운전(계약직)	1	1				임기제 시설(운전)	1	1			
토목(계약직)	1	1				임기제 시설(토목)	<u>0</u>	<u>0</u>			
신 설						기계운영	<u>4</u>	<u>3</u>		<u>1</u>	
						전기운영	<u>8</u>	<u>8</u>			
						필기운영	<u>27</u>	<u>20</u>	<u>1</u>	<u>1</u>	<u>5</u>
						전산운영	<u>1</u>	<u>1</u>			
						운전	<u>23</u>		<u>2</u>	<u>1</u>	<u>20</u>
						시설관리	<u>21</u>	<u>13</u>		<u>1</u>	<u>7</u>
						숙기	<u>2</u>		<u>2</u>		
						방호(경비)	<u>7</u>	<u>3</u>	<u>2</u>	<u>1</u>	
						원예운영	<u>1</u>	<u>1</u>			
9급 소계	<u>123</u>	<u>77</u>	<u>2</u>	<u>9</u>	<u>35</u>	9급 소계	<u>132</u>	<u>82</u>	<u>2</u>	<u>9</u>	<u>39</u>
행정	28	10	2	4	12	행정	<u>29</u>	<u>11</u>	2	4	12
세무	7	7				세무	7	7			
사회복지	24	1			23	사회복지	24	1			23

행정 또는 사회복지	5	5				행정 또는 사회복지	5	5			
공업	4	4				공업	4	4			
보건	3			3		보건	3			3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시설	7	7				시설	7	7			
행정 또는 시설	13	13				행정 또는 시설	13	13			
전산	2	2				전산	2	2			
통신	2	2				통신	2	2			
녹지	4	4				녹지	4	4			
농업	1	1				농업	1	1			
환경	1	1				환경	1	1			
행정 또는 전산	1	1				행정 또는 전산	1	1			
교통(계약직)	2	2				임기제 시설(교통)	2	2			
영상(계약직)	2	2				임기제 행정(영상)	2	2			
치위생사(계약직)	1			1		임기제 의료기술(치위생사)	1			1	
평생학습(계약직)	2	2				임기제 행정(평생학습)	2	2			
체육여가(계약직)	1	1				임기제 행정(체육여가)	1	1			
홍보(계약직)	1	1				임기제 행정(홍보)	1	1			
영양사(계약직)	1	1				임기제 식품위생(영양사)	1	1			
운전(계약직)	10	10				임기제 시설(운전)	10	10			
신설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	1	1			
						필기운영	5	2	0	0	3
						전산운영	0	0			
						운전	0	0			
						시설관리	1				1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화생방	2	2			
별정직 총계	12	6	6	0	0	별정직 총계	4	2	2		
6급상당 소계	3	3	0	0	0	6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비 서	1	1			
체육지도사	2	2				삭 제					
7급상당 소계	5	2	3	0	0	7급상당 소계	2	1	1		
비 서	2	1	1			비 서	2	1	1		
화생방관리	1	1				삭 제					
속 기 사	2		2			삭 제					
8급상당 소계	4	1	3	0	0	8급상당 소계	1		1		
속 기 사	2		2			삭 제					
비 서	1		1			비 서	1		1		
기록물관리	1	1				삭 제					

기능직 총계	192	141	5	9	37	기능직 총계	0	0	0	0	0
6급 소계	11	11	0	0	0	6급 소계	0	0	0	0	0
전 기	5	5				삭 제					
기 계	2	2									
운 전	2	2									
필 기	1	1									
조 무	1	1									
7급 소계	79	74	0	4	1	7급 소계	0	0	0	0	0
전 기	13	13				삭 제					
기 계	8	8									
운 전	32	29		3							
조 무	3	2			1						
방 호	6	6									
필 기	13	13									
위 생	1			1							
토 목	1	1									
지 도	2	2									
8급 소계	92	50	5	5	32	8급 소계	0	0	0	0	0
전 기	8	8				삭 제					
기 계	4	3		1							
운 전	23	0	2	1	20						
조 무	3	1			2						
조무(지도)	18	12		1	5						
필 기	27	20	1	1	5						
전 산	1	1									
방 호	7	4	2	1							
농림(원예)	1	1									
9급 소계	10	6	0	0	4	9급 소계	0	0	0	0	0
전 기	1	1				삭 제					
운 전	1	1									
기 계	1	1									
토 목	0	0									
필 기	5	2	0	0	3						
전 산	1	1									
조 무	0	0		0	0						
조무(지도)	1				1						
신 설						연구직 계	1	1	0	0	0
						연구사 소계	1	1	0	0	0
						기록연구	1	1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3-109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등에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6길 23-6 등 1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연번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고시(예정)일	변경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6길 23-8 (영등포동3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6길 23-8 (영등포동3가)	2013-12-05	건물군분할	변경없음(영등포동3가 23-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6길 23-6 (영등포동3가)	2013-12-05	건물군분할	변경(영등포동3가 2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3-110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및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아 래 -

대상시설			지정 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당초	변경		
오피스텔 신축공사	영등포구 당산동5가9-3외 2필지	코리아신탁(주)	건축물착공에 따른 신규지정	-	D		신규 지정
건축물	신길6동 3007-000	장홍애	안전점검	E	D		등급 조정
건축물	신길6동 3007-000	노슬아	“	E	D		등급 조정
건축물	신길6동 3013-000	김영란	“	D	-		해제
건축물	신길6동 3025-002	전민정	“	D	-		해제
건축물	신길6동 3040-000	강규호	“	D	-		해제
건축물	신길6동 3183-001	김대옥	“	E	D		등급 조정
건축물	신길6동 3183-092	김유인	“	D	-		해제
건축물	신길6동 3183-101	지창근	“	D	-		해제
건축물	신길6동 3261-000	정혜은	“	E	D		등급 조정
건축물	신길7동 1830-000	신길7주택조합	“	E	D		등급 조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3-11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26호(2001. 4. 21)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 12. 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된 영등포구 문래동 영문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2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조서

■ 학교 변경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없 음	1	학교	초교 (영문)	문래동6가 13	8,542.7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26호 (2001.04.21.)	-

■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건폐율(%)		용적률(%)		층 수		건축제한완화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학교	초교 (영문)	30	50	120	200	5	5	-	준공업지역 (5층 이하)

■ 학교 건축범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교	건폐율 : 기존- 32.00%, 변경후- 37.96% 용적율 : 기존-122.18%, 변경후-162.14%	영문초 교사증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건축범위 변경 결정

나) 관계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3-1409호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길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7호(2013.10.10)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청취 하고자 공람공고 합니다.
2.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3. 12. 5. ~ 2013. 12. 20.(공람일로부터 15일간)

나. 공고방법 : 영등포구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다.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26]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02)844-1578]

라.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 관계도서

마.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 사 업 명 칭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 시 행 면 적 : 76,602.0㎡

○ 시 행 자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

○ 건축계획 주요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지면적	59,073.8㎡	59,073.6㎡	감) 0.2㎡
연 면 적	211,708.98㎡	233,508.68㎡	증) 21,799.7㎡
용 적 륜	239.59%	264.10%	증) 24.51%
규 모	지하 2층/지상 26층	지하 2층/지상 29층	증) 3개층
세 대 수	1,236세대 (임대 230세대)	1,546세대 (임대 286세대)	증) 310세대 [증) 임대 56세대]
기 타	○ 대형주택 축소 및 중,소형 주택 확대 - 85㎡초과 : 감 257세대 - 84㎡~60㎡ : 증 259세대 - 60㎡이하 : 증 284세대 - 40㎡이하 : 증 24세대		

○ 정비기반시설 주요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도 로	6,796.4㎡	7,285.2㎡	증) 488.8㎡
공 원	3,607.9㎡	3,606.1㎡	감) 1.8㎡
녹 지	3,698.0㎡	2,844.5㎡	감) 853.5㎡

바. 기타사항

- 주민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및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련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3-1444호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에 근거한 도로명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및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13. 12. 5. ~ 12. 20.
2. **공고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수렴
(도신로29아길)
 - 가. 도로구간의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
 - 나.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 등
3.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가. 관계서류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조서/도면
(별첨 조서 및 도면)
 -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주민센터
4. **의견 제출방법**

[별첨]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영등포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방 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각 동주민센터
 - 나. 전 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02-2670-3719,3723)
 - 다. 팩 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02-2670-3549)
 - 라.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5. **도로명의 결정 절차**

도로명(안) 부 여	의견수렴 공 고	의 견 제 출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상정	도로명주소 위 원 회	고 시
도로구간 설정 및 예비도로명 부여	14일 이상	제출의견 검토/반영	30일 이내	심 의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

【붙임】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서

성명 및 기관·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신 청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사유)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조서

연번	구 분	도로명	도로명코드	위계	길이 (m)	폭 (m)	시 점	종 점	기초간 격(m)	기초번호		부여사유	유사 도로명	중심선	관할행정 구역	비 고
										시작 번호	끝번호					
1	변경 전	도신로29아길	4154324	길	460	10	영등포동 647-3	도림동 819	20	1	46	도신로에서 분기되 는 도로로 해당 일 련번호 활용	도신로 외 54개	도면참조	영등포구	도로명 및 시, 종점 변경
	변경 후	도영로22길	4154324				도림동 819	영등포동 647-3				도영로에서 분기되 는 도로로 해당 일 련번호 활용	도영로 외 4개			

도로구간 및 도로명과 도로중심 도면

1. 도로구간 변경(도신로29아길 → 도영로22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3-1445호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 공람공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도서를 공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23)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23) 및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1) 구역명 : 신길동 3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 2) 사업의명칭 : 신길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 3)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사업방식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도시환경 정비사업	신길동 39-3번지 일대 도시환경 정비구역	신길동 39-3번지 일대	-	중)25,489.5	25,489.5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m ²)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489.5	-	25,489.5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035.5	감)3,035.5	-	-	3단계 종상향
	제2종일반주거지역	22,352.4	감)22,352.4	-	-	2단계 종상향
	준주거지역	-	중)25,489.5	25,489.5	100.0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101.6	감) 101.6	-	-	하향조정

■ 용도지구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 세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기정	-	한강로 지구	일반 미관지구	서울역광장~구 영등포구청	218,200	8,725	양측 12~20	서고 제194호 (84.04.17)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5,489.5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5,317.1	20.9	
	도 로	3,403.6	13.4	
	공 원	1,872.3	7.3	
	학 교	41.2	0.2	존치
획 지	소 계	20,172.4	79.1	부대복리시설 포함
	공동주택	20,172.4	79.1	

※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제외하였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 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대로	1	6	35	주간선 도로	4,730	한강대교남단	서울대교남단	일반 도로	-	서고 444 (79.10.18)	
변경	대로	1	6	35~ 45	주간선 도로	4,730 (93)	한강대교남단	서울대교남단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3m확폭
신설	중로	2	가1	15	집산 도로	240	신길동 48-9	영등포동 571-6	일반 도로	-	-	현황10m 확폭 5m
신설	소로	3	가1	10	국지 도로	92	신길동 45-21	신길동 48-9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90	신길동 31-27	신길동 41-1	일반 도로	-	-	도로번호 미기입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72	신길동 41-1	신길동 47-12	일반 도로	-	-	도로번호 미기입

※ ()는 정비구역 내 구간임

■ 공 원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 공원	신길동 183-5번지 일대	-	중)1,872.3	1,872.3	-	

■ 학 교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길동 184-3	25,901.0	-	25,901.0	서고98 (78.03.15)	대상지내 일부 편입면적 (41.2m ² 존치)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비 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106.3	
	경비실	30.0	
	어린이놀이터	1,669.5	
	작은도서관	201.0	
	보육시설	456.5	지역여건 변화 등에 따 라 부득이하게 시설 및 면적을 변경할 시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을 통 하여 결정 (최소 계획면적 표기)
	경로당	348.9	
	주민운동시설	2,478.5	
	주민공동시설	2,636.3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m ²)	명칭	면적(m ²)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신길 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	25,489.5	획지	20,172.4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128	-	-	128	-	

바) 건축시설계획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 층수	비 고
	명 칭	면 적(m ²)	명 칭	면 적(m ²)						
신 설	신길 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	25,489.5	획지	20,172.4	신길동 39-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5% 이하	471% 이하	114m 이하 38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기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 제3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해야 함				
	· 주택규모별 건립세대수(장기전세 및 임대주택 포함)				
	구분(전용면적)		계	분양주택	장기전세주택
	계		923	570	292
	85m ² 이하		923	570	292
	85m ² 초과		-	-	-

심의완화 사항	· 용도지역 세분변경 관련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		
	· 허용용적률 완화사항(430%)		
	구 분		건축계획(안)
	필수 항목 (4개)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향후 계획시 적합하게 반영
		커뮤니티지원시설	·커뮤니티시설 계획예정
		에너지 효율 건축물	·향후 계획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친환경 건축물	·향후 계획시 친환경 최우수 75점 이상
선택항목	신재생 에너지 사용	·향후 계획시 적합하게 반영	
※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430%, 상한용적률 500%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북측 철도변은 10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2개소 지정(4m, 2m)		

라. 관계도서 : 기타 정비계획 및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면과
도서로 같음. 단, 본 계획(안)은 향후 관련부서 협의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